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7월 13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12.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7. 11(토)	담당부서	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3-870-5450)	담 당 자	김지훈 사무관(043-870-5455) 유경희 연구관(043-870-5418)

가정용 미용기기,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 강화된다

- 산업부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 이승우)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여, '가정용 미용기기'와 '방한대 마스크'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< 가정용 미용기기 >

□ 최근 식약처의 **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서 가정에서 미용 목적**으로 사용되는 **발광다이오드(LED) 마스크, 플라즈마 미용기기, 눈 마사지기, 두피 관리기** 등이 개발되어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판매되고 있다.

○ 하지만, 이러한 가정용 미용기기가 **안전성 확인 절차 없이 판매**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무총리 주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하는 등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

○ 이에 따라 국표원은 가정용 미용기기를 생활용품의 '**안전확인**' **품목**에 포함시켜서, **안전기준을 제정**하고 **국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·검사**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.

○ 우선 **발광다이오드 마스크에 대한 예비안전기준***을 마련해 6월 24일 공고한 바 있는데,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예비안전기준을 **정식으로 법령체계 내에 반영**하기 위한 것이다.

* (예비안전기준 주요내용) ①광(光)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~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

< 방한용・패션용・스포츠용 마스크 >

□ 미세먼지・유해물질・비말 등의 **차단 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**의 경우, 그동안 **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'방한대'**란 명칭으로, 규제수준이 가장 낮은 **'안전기준준수' 품목**으로 안전관리를 하여왔다.

* "안전기준준수" 등급이란, 업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('18.7월 시행)로서, ①국가통합인증마크(KC) 미부착, ②시험·검사 의무 부재 등 안전규제수준이 가장 낮음

○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의 대용품으로 **면(棉) 마스크,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용 마스크의 사용이 크게 급증**하고 있으나, 국가통합인증(KC) 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안전성확인을 위한 제품시험 의무없이 판매할 수가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.

○ 이에, '방한대'로 판매되는 일반 마스크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, 일반 마스크의 제품안전관리를 ①「**안전기준준수 → 공급자적합성 확인**」품목으로 안전관리 등급을 상향조정하고, ②명칭도 「**방한대 → 방한용·패션용·스포츠용 마스크***」로 변경할 계획이다.

* 안전기준 세부내용도 우레탄폼 등 신규소재에 대한 유해물질 요건 추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

○ 이렇게 되면, 앞으로는 제조·수입업자는 ①제품에 **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**해야 하며, ②**제품의 출고·통관 이전에 시험·검사***를 받아야 한다.

* (시험성적서 발급기관) 스스로 시험·검사 또는 국·내외 시험검사기관에 시험·검사 의뢰 후 발급 가능
(시험·검사비용) 마스크당 약 7만원 내외 예상

< 안전기준준수 vs. 공급자적합성확인 비교 >

구 분	KC마크 부착여부	시험·검사 의무	성적서 보관의무	(요구시) 성적서 제출의무
안전기준준수	X	X	X	X
공급자적합성확인	O	O	O	O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**개정안을 7월 13일자로 입법예고** 하였다.

○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이나 기업은 입법예고기간(7.13~9.11일)동안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* (의견제출방법)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 ②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③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

* (보내실 곳)
 - 우편주소 : (27737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
 - 이메일 : consumer1@korea.kr
 - 팩스 : 043 - 870 - 5677

□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**"새롭게 개발되는 신제품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**할 수 있고,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**소비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**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김지훈 사무관(☎ 043-870-5455), 유경희 연구관(☎ 043-870-541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